

# 補充質疑에 對한 書面答辯書

- 질의의원 : 서병호
- 답변공무원 :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 제 목 :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 시설개선등 향후대책

## 답변내용

- 서병호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 시설개선등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스판매업 허가는 액화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달성군 가스판매사업 허가에 대한기준('92. 9. 1 고시 제16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가스판매업 허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허가제한 사항은 시장, 병원등 다중장소에서의 안전거리 20M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상 부득이 허가권자가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조건 및 지역은 허가권자가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위 조건이 충족될 경우 허가를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 일반주거지내에서 가스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위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 현재 거의 대부분이 주거지 또는 주거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관내 가스판매업소는 현재 33개 업소로서 시본청, 군,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와 합동으로 금년에 3차례에 걸쳐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개업소(경고 9, 시정 11)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스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계도로서 한건의 가스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